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14일, 이철규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9.10.) 상정

제3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5.11.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의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 상정, 소위심

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철규의원)

광업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생산보국이라는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과 일반 광물을 생산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주요 선진국들은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산사고 순직자들을 기리고 광업의 중요성과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근간이었던 석탄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은 아직도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순직한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산업원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하 작업장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광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광업은 각종 산업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1950~1970년대에는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연탄 등 서민 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이 광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석탄 등 광물을 생산하여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해 온 광업인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광복 이후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날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업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광업 및 광업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광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의 지정과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데 의의가 큰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되,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업과 광업인의 헌신은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 광업 시책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현재 기념일 중 광업을 조명하고 그 종사자의 헌신을 격려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 기념일은 없으

므로 광업인의 날은 기념일의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는 점, ② 농업, 임업, 수산업의 경우에는 각각 농업인의 날, 임업인의 날, 수산인의 날을 정하여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있다는 점, ③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주요국도 광부의 날(Miners' day)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광산사고 희생자들을 기리고 광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업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성민)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광업인의 날) ① 국가산업에서 광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6조의3(광업인의 날) ① 국가 산업에서 광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정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